간 행 물 번 호
KEITI-2025-20-14

KEITI 미래를여는 환경솔루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 및 Q&A 사례집

2025.12.

기후에너지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ontents

제1장 일반사항

01 발간목적 04
02 연구개발비 관련 법령 및 규정 04
03 용어 정의 05
04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부담기준 06
05 연구개발비 지급 08
06 연구개발비 이관 09
07 연구개발비 이월 09
08 연구개발비 정산 09
09 연구개발비 회수 10
10 정산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12
11 연구개발비 정산잔액 회수 유예신청 12

제2장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사용기준 및 Q&A

01 공통 사항
1 연구개발비 계상·사용 공통기준 16
2 공통 사항 Q&A 17
3 공통 사항 불인정 사례 20
02 인건비
1 인건비 계상·사용기준 22
2 인건비 Q&A 24
3 인건비 불인정 27
03.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계상·사용기준 29
2 학생인건비 Q&A 30
3 학생인건비 불인정 사례 32
04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사용기준 33
2 연구시설·장비비 Q&A 34
3 연구시설·장비비 불인정 사례 36
05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비 계상·사용기준 37
2 연구재료비 Q&A 38
3 연구재료비 불인정 사례 39
06 연구활동비
1 연구활동비 계상·사용기준 40
2 연구활동비 Q&A 45
3 연구활동비 불인정 사례 48
07 연구수당
1 연구수당 계상·사용기준 51
2 연구수당 Q&A 52
3 연구수당 불인정 사례 53
08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 계상·사용기준 54
2 위탁연구개발비 Q&A 55
3 위탁연구개발비 불인정 사례 55
09 간접비
1 간접비 계상·사용기준 56
2 간접비 Q&A 57
3 간접비 불인정 사례 58

제1장

일반사항

01 발간목적	04
02 연구개발비 관련 법령 및 규정	04
03 용어 정의	05
04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부담기준	06
05 연구개발비 지급	08
06 연구개발비 이관	09
07 연구개발비 이월	09
08 연구개발비 정산	09
09 연구개발비 회수	10
10 정산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12
11 연구개발비 정산잔액 회수 유예신청	12

01 일반사항

01 발간목적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개발기관 대상
연구개발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행정낭비 예방

연구개발비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연구개발비 사용 유도

과제 성공

02 연구개발비 관련 법령 및 규정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2024. 2. 6., 일부개정]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5.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4.12.10.] [환경부훈령 제1668호, 2024. 12. 10., 일부개정]
6.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개정 2024. 12. 18.]

03 용어 정의

1.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 · 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금액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4.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5.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지급 · 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 · 분석 업무를 하는 시스템

6. 연구과제지원시스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 등)를 지원하는 시스템

7.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를 포함)

8. 학생연구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학석사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위 행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9. 현물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10. 원래계획

원래계획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말함. 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말함

04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부담기준

1.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

▹ 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 **영리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단,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4항 외 과제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4항 해당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	○

2.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혁신법시행령 제19조)

▹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초기 중견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4항)
  · 연구개발시설 ·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2항)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직접비 內 현물 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內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제2항)	○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 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6조제1항)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7조제1항)	○
간접비	수정직접비 x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9호)	×
연구수당 불인정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p 초과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6조제7항)	×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혁신법시행령」제26조제5항제3호)	×

05 연구개발비 지급

1.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 일괄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건별지급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별로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지급

2.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 통합 RCMS를 사용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건별 지급함

06 연구개발비 이관

1.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타 연구개발기관·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이관해야 함

▹ 직접비 : 직접비 잔액

▹ 간접비

– 비영리기관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출식 :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X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
** 간접비 총액은 연구개발비 이관시점까지 수령한 간접비 금액을 말함

– 영리기관 : 간접비 잔액

07 연구개발비 이월

▹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9호)

▹ 현물을 제외한 계속비 편성(단계 내 이월)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 없이 자동 이월

– 연도별 현물 부담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필요

▹ 간접비의 경우 계속비 편성(단계 내 이월) 가능하나 단계 간 이월 불가능

▹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08 연구개발비 정산

1.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이자 포함)

2.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해당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 RCMS를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혁신법 제13조제6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통합 RCMS를 통하여 연차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 정산 실시

-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함
- 통합 RCMS에 입력한 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합 RCMS를 통한 정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정산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산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자료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함

09 연구개발비 회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산출식 :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X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혁신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지원금 지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 지원금 지분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 단계 (단계 구분이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첫째 자리까지만 활용

▷ 직접비 사용비율(직접비 사용비율 산정에 현물은 고려하지 않음)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통합 RCMS 적용과제]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해당 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해당 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③ 직접비 사용비율 = 해당 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간이 영리기관(공기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사용하지 아니한 간접비와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간접비를 더한 금액

▷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과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10 정산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정산 이의신청(「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7호서식)을 할 수 있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기관
정산 결과(회수 금액) 통보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함)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 반납

11 연구개발비 정산잔액 회수 유예신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이 경우, 기준일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최초로 통보한 날로 함)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사용 단계]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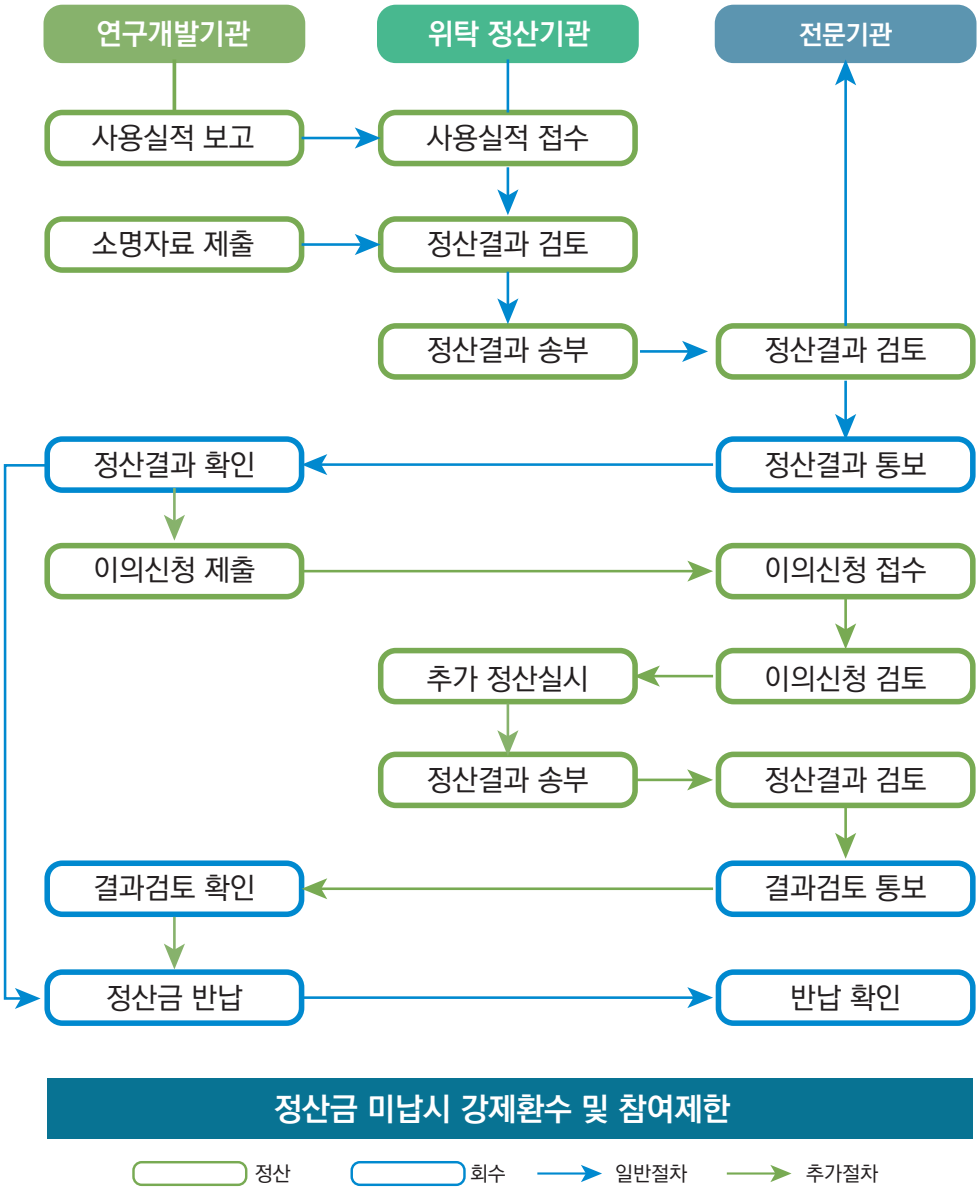

MEMO

제2장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사용기준 및 Q&A

01 공통 사항 16

02 인건비 22

03 학생인건비 29

04 연구시설·장비비 33

05 연구재료비 37

06 연구활동비 40

07 연구수당 51

08 위탁연구개발비 54

09 간접비 56

02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사용기준 및 Q&A

01 공통 사항

1.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사용 기준

1)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 관련법규: 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등) 제3항

2)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 중복 계상 : 동일 비용 2회 이상 중복 계상, 동일 비용 현금/현물 중복 계상, 동일 비용 직접비/간접비 중복 계상,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 (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제외)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 ·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법규: 혁신법 매뉴얼 178p 〈표 3-5〉

3)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시설 · 장비 구축,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4) 영리기관의 연구개발비 직접비는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2. 공통 사항 Q&A

Q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기한 내에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또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이 필요함

부당집행금액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내부거래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 "인적"이란 영리기관의 영업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인적 구성원을 의미하며, "물적"이란 영리기관의 영업 행위와 관련한 재산을 의미함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6호는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인적 ·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관전문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인적 ·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범위(예시)

  ① 대표자 또는 주요주주가 동일한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주요주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경우 형제자매)
  ③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④ 인력, 자금, 영업시설이 공유되는 경우
  ⑤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⑥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동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최초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계상한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변경을 통해 별지 제21호 서식을 수정 · 제출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상기 언급한 절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①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②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③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한 방법

Q 단계정산을 하는 데 매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해야 하나요?

- 「혁신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보고서는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혁신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합 RCMS를 통하여 등록·보고해야 함

Q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 전까지 사용 가능한 연구개발비에는 무엇이 있나요?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Q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의 정산 및 정산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최우수(S등급)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하며, 최우수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 다만, 상시점검을 시행하며 상시점검 수수료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정산기관 선정시 협약한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Q 2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11억 원인 경우 청년의무채용 인원과 채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의무채용은 5억 원당 1명으로 2명을 채용해야 함.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 필요

Q 타 국책과제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도 현물출자가 가능한가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관 자체재원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부담함을 의미하므로 기관 자체 재원이 아닌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없으나,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에 따라 현물 계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계상 가능

Q 연구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세세목 그대로 예산 사용해야 하나요?

- 「혁신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은 통보로 가능하며,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연구개발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은 제외됨

3. 공통 사항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는 사무실 공간이 좁아 추가로 사무실 공간을 임차하여 연구실로 사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비로 추가 사무실 임차료 12,000,000원 지급	• 사무실 임차료 12,000,000원 불인정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범용성 사무공간은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추가적인 연구공간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정의)] – 연구공간은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 ㈜○○ 왕고집 연구원은 혁신법 이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사전 승인 대상에 대하여 연구기관 내부 결재만 받고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 • 중요 협약 변경에 따른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나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사례	• 사전 승인 대상의 연구비 변경을 임의로 하거나 사용한 경우 불인정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 – 전체 연구개발기관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 –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 홍길동 연구원은 연구기간(단계)종료 이후 연구개발비의 미사용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실적 보고일 전에 남은 연구비 사용 • 지출원인행위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 가능한 항목 이외의 사용액을 불인정 [혁신법매뉴얼 제3장제2절 다.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 사용기준 제22조제4항]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료 및 저술출판비용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 가능함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이환경 연구책임자는 과제협약 후 연구과제와 관련된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게되어 참관에 필요한 등록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연구비에서 수령 • 연구비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한 경우	•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때에 개인의 현금을 먼저 사용 후 정산한 금액은 불인정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혁신법매뉴얼 제3장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이 필요함
• ㈜OO에서 2022년 연구비카드로 재료비와 연구활동비 103건 41,226,000원 사용 •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10%) 4,122,600원을 환원하지 않고 정산실시	•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4,122,600원 불인정 처리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제1호]]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 (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OO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고 식비로 220,000원을 사용 • 내부 회계처리시 회의비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식비 220,000원을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	• 실제 접대비 성격으로 사용한 경우 접대비는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용으로 전액 불인정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한 회의비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식비 계상 가능 • 환급여부를 불문하고,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연구개발비로 계상 불가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02 인건비

1. 인건비 계상·사용기준

1) 인건비는 연(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월(대학, 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단위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 개념 : 연(월) 급여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
- 산출식 :

$$\frac{\text{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text{「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65조제1항

2)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가능함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구분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130% 이하	월 100% 이하	연 130% 이하	월 100% 이하	월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100% 이하	월 100% 이하	연 100% 이하	월 100% 이하	—
학생연구자	월 100% 이하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39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65조제7항

3) 비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

-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 **계상 불가**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영리기관 소속임직원*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영리기관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 관련법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4)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시 가능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 종료(2023.12. 31.)에 따라 2024년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인건비 현금계상 완화 기준 미적용

5)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하여 계상 불가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직접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 및 사용 금지)

- **참고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이며, 간접비에서 지급할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임
  ※ 관련법규: 혁신법 매뉴얼 185p 〈표 3-7〉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세목	증명자료
내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 ※ 집행 구분(현물, 현금, 미지급),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포함 ② 급여명세서(월별) ※ 참여연구자 개인 급여, 4대보험기관부담금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계좌이체증명(펌뱅킹 사용기관인 경우, 내부시스템 이체완료 확인증으로 갈음 가능) ※ 수취인 예금주명, 수취인 예금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동일할 경우, 계좌이체증명 제출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 가능 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외부인건비	①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해당 참여하는 과제의 기본 정보, 연구자 기본정보, 참여기간, 연(월) 인건비 계상 금액, 과제 참여 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④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⑤ 계좌이체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이동 공문(내부 파견문서)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소속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상기의 증명자료 중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대신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2. 인건비 Q&A

Q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9조·제48조·제57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 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관리되어야 함)

Q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나요?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 자체 규정에서 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Q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 인건비 증액 가능함. 단,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 사항, 비영리기관의 경우 통보 사항임

Q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 "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 세부기준"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구분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기준
내부 참여 연구자	비영리기관	①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제외) ② 「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 포함),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
	영리기관	①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②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는 참여연구자 ③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④ 그 밖에 장관이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외부 참여연구자		①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참여연구자 ②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Q 고용계약 연구자의 고용계약서에는 월 기준단가 근로소득만 표기되며 해당연구자는 타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기타소득도 관리되고 있을 때 인건비계상률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문의하신 상황에서의 인건비 계상률 관리를 위한 월 급여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Q 파견(장기출장)이나 출산휴가 때의 인건비도 지급 가능한가요?

- 「혁신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의 급여(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어 회사 업무상 파견에 의한 장기출장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

-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에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함

  ※ 일반적으로 출산휴가인 경우 2개월은 사업자(연구개발비)가 유급휴가를 주고, 국가(고용보험)가 무급 30일을 지원함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총액은 지급하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함

Q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인건비 미지급으로 타 과제 참여 가능한가요?

- 미지급인건비 계상률을 포함하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이하 일 경우에는 과제 참여가 가능함(3책5공준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Q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 항목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서 사용 가능.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연구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에서 계상·사용 불가

-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라도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한 급여총액 산정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 시 해당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Q 인건비 월 지급액에 식대 및 주휴수당 계상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계상 가능

Q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 인건비 또는 연구활동비에서 지급 가능함. 참여연구자면 참여기간동안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하며, 한시적인 인력 활용은 연구활동비(일용직활용비)를 사용할 수도 있음

  ※ 혁신법에서 인건비 계상기준은 「근로기준법」,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 자체규정임

Q 청년의무 채용 관련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을 못 하는 경우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채용한 청년인력의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월 이후 대체인력 고용노력 지속하는 경우에는 기지급금 인정

- 인건비 현물계상 시 계상된 인건비는 현물 미사용분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 시 현금으로 반납해야 함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간접비에서 계상할 수 있나요?

- 참여연구자(연구지원인력 포함)*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한함
- 다만, 개정사항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령 시행일(2024. 12 .3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대해 계상 가능함

3. 인건비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홍길동 연구원은 월급여 3백만원으로 과제에 12개월 참여 • 인건비 계상률1~6월 40%에서 7~12월 100% 변경 지급 **인건비 지급액 :** (120만원X6월)+(300만원X6월) =2,520만원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 변경 등록 누락 (RCMS 인건비계상률 1~12월 40%)	• 인건비 지급 한도액 1,440만 원 (300만원*40%*12개월=1,440만원)을 초과한 1,080만 원 불인정 ※ RCMS에 등록된 인건비계상률로 정산 원칙 **[혁신법매뉴얼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산출한 인건비계상률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 ㈜○○는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인건비 예산으로 3,600만원 편성(1~12월) • 10월초 신규채용되어 3개월 인건비 900만원 지급 • 신규인건비 잔액 2,700만원 통보성 변경으로 재료비 전용	• 재료비로 전용한 신규인건비 잔액 2,700만원 불인정 ※ 영리기업 신규인력 현금인건비 감액은 사전 승인 대상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제4호]** -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 ㈜○○에서 참여연구원이 아닌 연구개발과제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의 연구근접지원 인력인건비로 지급	•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전액 불인정 ※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계상불가 (영리기관은 간접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혁신법제24조제2항, 혁신법 매뉴얼 185p 〈표3-7〉]** - 연구지원인력은 '혁신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 - 연구지원인력에는 지원부서에 속한 지원인력, 연구부서에 속한 지원인력을 모두 포함 -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속한 지원인력을 의미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대학의 참여연구자 기준단가 4백만원/월, 인건비계상률 75%, 월급여 3백만원, 현금인건비 지급액 3백만원	• 인건비계상률 75%이므로 300만원 X 75% = 225만원 즉, 매월 75만원 불인정 ※ 인건비계상률 산출시 기준단가가 아닌 월급여를 분모로 산출 (인건비계상률 100%일 때 3백만원/월 지급 가능) [혁신법 매뉴얼 194p Q11]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 ○○대학의 나성실 연구원은 인건비 계상률 0%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 나성실 연구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비로 지급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불인정 [혁신법 매뉴얼 193p Q1] –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 불가
• ㈜○○은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음(기존 인력 현금인건비 지급 가능함) • 신규 청년인력의 계상된 인건비 250만원에서 매월 20만원을 줄여 기존 인력인 K과장에게 2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여 인건비 총액은 변경 없음	• 청년인력의 계획한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정산시 회수 (K과장에게 지급한 매월 20만원은 모두 불인정)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 인건비 총액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 감액은 사전 승인 대상(환경부: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정산시 회수)

〈 그 외 인건비 현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불인정 사례 〉

- 현금인건비 계상 불가한 참여연구자에게 현금인건비 지급액 불인정
- 현금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의 자계좌로 일괄 선인출 한 경우(인건비의 경우 통합 RCMS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집행 후 연구개발기관의 자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 근속기간 1년미만인 참여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 불인정
- 연구기간(단계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 불인정
- 월 중간에 참여시작 또는 참여중단한 연구자의 인건비를 일할계산 하지 않은 경우 초과집행금액 불인정
- 회사 직원의 주민세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 외부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 사실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인건비 불인정
-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인건비 항목으로 사용한 금액

03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계상·사용기준

1)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월 100% 이내에서 관리

- **학생인건비계상률 제외 항목**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원 이상, 석사과정 220만원 이상, 박사과정 300만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학생인건비 최저 계상률** :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통합관리계정의 균등지급액 및 차등지급액 포함)이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 제40조, 제49조, 혁신법 매뉴얼 195p

2)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함

- **확약대상** :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기관장 3자 간 협약
-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미작성 가능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2항

3) 상위 학위과정이 확정된 경우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상위 학위과정에 대한 합격통지서, 입학예정서 등 증명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관련법규 : 혁신법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비고1. '학생연구자' 정의

4)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대학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 가능)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직장인 학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참여 가능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196p

5)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연구개발기관(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8항, 제88조

6) 개인별로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 부당회수 등 금지) 제1항~제4항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세목	증명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 ※ 연구개발과제 기간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2024년 9월 이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 자료 ③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학적, 참여기간, 변경사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적,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2. 학생인건비 Q&A

Q 학생연구자가 시간강사인 경우 학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시) 박사과정으로 학생인건비 기준 300만원/월, 강의수당 50만원/월 수령 예정인 경우
① 학생인건비 300만원-강의수당 50만원 = 연구개발비로 250만원 수령
② 단기근로가 인정되어 학생인건비 300만원+강의수당 50만원 = 연구개발비로 300만원 수령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학생연구자인 강사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강사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 포함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강사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서 제외됨.
  즉, 직장가입자인 경우 예시 ①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예시 ②의 경우로 계상·지급 가능

Q 학생연구자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학생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더라도 총 학생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장학금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시 제외

Q A 대학교 졸업 후 B 대학 대학원 진학 예정인 학생연구자가 A 대학 또는 B 대학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 학생연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14호의 나목에 따라 현행 학위 과정의 A대학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에 대해 A대학에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진학 예정인 B대학에서는 해당 학생과 근로계약 등을 통해 B대학에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함

Q 박사과정 학생연구자에게 졸업월에 학생인건비(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100% 지급 가능한가요?

- 해당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된 해당월(졸업월)의 지급액만큼 지급이 가능함. 9월부터 2월까지 월별 지급률을 100%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졸업일에 상관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작성된 지급률만큼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 가능함

Q 박사 후 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박사 후 연구자'는 「혁신법시행령」[별표2] 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하여야 함

Q 직장인(무급휴직 상태)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함. 다만,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직장인 학생 등에게는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과 금액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Q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이는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Q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제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혁신법」에서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유무에 관계없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제출하면 됨

Q 소속 학교와 연구참여 학교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다른 경우 인건비계상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속대학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300만원, 연구참여한 대학 기준 310만원)

- 소속대학 기준으로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참여하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소속대학에 통보하여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 상위 학위과정 진학 시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Q 학생연구자가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초과 계상 가능한가요?

- 불가함.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학생인건비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참여 기간 및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여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급하여야 함
  ※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참여 확약서 변경가능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3항)

Q 학생인건비 증액 한도가 있나요?

- 학위 과정별 계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계상기준 : ①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 월 130만원,
  ② 석사과정 : 월 220만원,
  ③ 박사과정 : 월 300만원,
  ④ 통합과정 : ① 부터 ③ 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3. 학생인건비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대학의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3년간 3개 과제에서 39,303,000원을 추가집행	•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39,303,000원 불인정 ※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 사용해야 함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 ○○ 기타 비영리기관이 대학 등에 재학중인 학생연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함	•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기타 비영리기관에서 계상한 학생인건비 전액 불인정 • 학생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등으로 변경 필요 [사용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대학,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관이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한해 계상 및 사용 가능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비대상 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참여확약서 등 과제 참여 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이 학생인건비를 사용	• 해당 과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불인정 [혁신법 매뉴얼 196p 〈표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04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사용기준

1)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계기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상기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www.zeu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 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부착해야 함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제2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

2)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검수완료) 하여야 함

- 단,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까지,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과제(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기한 적용 가능('25년도 변경사항)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제5항, 제6항

3)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개발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제5절(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210-213p)

4)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하고 구매해야 함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세목	증명자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2. 연구시설·장비비 Q&A

Q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도 구입계획 변경시 전문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요?

예시) 사업계획서에는 A장비(15,000천원) x 2대 = 30,000천원
→ B장비(25,000천원) x 1대 = 25,000천원)

-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사전 승인대상에서 제외
-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전문기관장의 사전 승인 필요

Q 장비 도입 기한이 원칙상 과제종료 2개월 전, 긴급상황시 1개월 전까지인데, 이 때 종료시점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의 종료시점은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는 단계)의 종료일을 의미함

Q 연구시설·장비비로 노트북이나 PC를 구매 할 수 있나요?

- PC, 노트북 등 일반적인 사무용기기는 연구활동비에 해당
- 다만, 연구목적상 고사양의 특수목적용 컴퓨터(전문가용 컴퓨터, 서버급 컴퓨터) 등은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 가능

Q 연구장비로 구매한 PC의 추가부품(메인보드, HDD/SSD, GPU카드 등)을 연구장비비로 구매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개발시험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제1호 [별표1의1]에 따라 연구장비는 '주장비, 보조장비, 부대장비'로 구성됨. 해당 과제에서 장비비로 주장비를 구매했다면, 관련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제3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 사용 가능함
-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물품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구용 인정 여부 등은 전문기관 협의 필요

Q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장비 사용료를 계상하지 않아도 대학 내 공동 실험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제4항제5호나목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용가능

Q 장비 구입처의 납품일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Q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노후 부품 교체 등 수리비용이 3천5백만원인 경우 심의 대상인가요?

- 심의대상 아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에 따라 장비수리비는 승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수리비가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장비를 구매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Q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연구장비의 보수비용 집행이 가능한가요?

- 수행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혁신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연구장비의 보수 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Q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 연구장비의 철거까지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연구시설 • 장비비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는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계획 • 연구개발기간은 '20.1.1 ~ '22.12.31이며 현지물류 사정으로 선적이 지연되어 '22.12.3에 수입신고 후 입고, 검수처리	•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되지 않은 장비비 사용액 불인정 ※ 종료 2개월(또는 1개월*) 전까지 검수완료 필수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 적용 가능 [혁신법매뉴얼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일(연구개발 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2개월 전까지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 ㈜○○는 과제 수행 중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매하기로 함 • 해당 장비는 공급가액 기준 28,000,000원이므로 영리기관인 ㈜○○의 사용실적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계상된다는 인식하에 사전승인 대상 협약변경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	• 연구장비 사용액 28,000,000원 불인정 ※ 협약변경 관련 사전승인 대상인 3천만원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 ※ 연구시설·장비 개별 단가는 3천만원 미만이나 여러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임에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동일 장비를 구입한 경우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제5호]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등
• 연구과제(연구개발기간 22.1.1~23.12.31)를 수행하고 있는 ㈜○○는 보유 장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함 • ㈜○○는 해당 장비를 2016.01.01. 1억원에 구입 • 내용연수 10년으로 23년초 기준 장부가액 3천만원으로 현물출자	• 현물부담액 3천만원 불인정 및 현금으로 3천만원 반납 ※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여야 함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 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 하나의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OO(주)에서 원래 3천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A연구장비가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4천만원에 구매함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20% 이상 증액 변경하여 구입하여 불인정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5호]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그 외 연구시설·장비비 불인정 사례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은 연구공간 임차료를 집행한 금액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장비가 연구개발종료일(단계의 경우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 상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연구장비는 불인정
- 연구시설 · 장비 개별 단가는 3천만원 미만이나 여러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됨에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해당 경우)의 승인 없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한 경우 불인정
-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을 집행하였으나 국가시설장비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비(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05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비 계상·사용기준

1)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로 사용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혁신법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라. 연구재료비

2) 연구재료비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제6절(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214-215p)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 · 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 검수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제3항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세목	증명자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2. 연구재료비 Q&A

Q 시험제품과 시험설비는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중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하나요?

- 시험제품 및 시험설비 제작비용은 연구재료비(연구재료 제작비)로 계상(「혁신법시행령」 별표2)

Q 연구재료 구입 기한은?

- 국가연구개발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구매 가능함.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적정 수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권고함

Q 연구재료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나요? (①연구개발과제 협약 전에 구입한 연구재료 ②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구입한 비용 ③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집행하여 구입한 연구재료)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4조에 따라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함. ①연구개발과제 협약 시작 전에 구입한 비용, ②협약 시작 후에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비용 모두 현물 계상 가능하나 ③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집행하여 구입한 연구재료는 현물로 중복 계상 불가함

Q 연구재료비의 자체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현물 계상은 어떻게 하나요?

- 연구개발기관 자체 생산·판매 제품은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현물 계상함

3. 연구재료비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의 홍길동 책임자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구재료비 예산 1천만원이 남은 것을 확인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1천만원의 연구재료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처 ㈜△△에게 종료일 전 1천만원의 연구재료 납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 후 계좌이체 • ㈜△△으로부터 납품받은 재료의 검수일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이며 재료는 현재 창고에 보관 중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검수완료 못한 재료비 1천만원 불인정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용 : 연구결과에 투입 또는 기여 [혁신법 매뉴얼 제3장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와 공동연구개발 기관인 ㈜△△는 연구개발과제 전부터 상호 주된 거래처임 • ㈜○○는 시작품제작을 위하여 평소와 같이 ㈜△△에 제작을 의뢰	• 시작품제작비 불인정 ※ 수행기관 간 거래 불인정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제5호]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에서 51,000,000원의 시작품 제작을 △△㈜에 의뢰 • ㈜○○의 대표이사와 △△㈜의 대표는 가족관계로 △△㈜의 대표는 주요 주주와 감사임 • ㈜○○와 △△㈜의 주소는 동일 건물내 층만 다름	• 시작품제작비 51,000,000원 불인정 ※ 거래회사의 대표자가 가족관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6호, 혁신법 매뉴얼 178p 〈표 3-5〉]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계상불가
• 재료를 해외에서 구매하였는데,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인지 모르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신고 필증과 배송 및 입고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 물품 입고 여부가 확인 불가하여 불인정 [혁신법 매뉴얼 215p 〈표3-15〉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 그 외 연구시설·장비비 불인정 사례 〉

- 연구개발비 소진을 위한 필요치 않은 기자재 및 재료를 과제 종료시점에 과도하게 구입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에 과제 사용 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재료비를 대량 구매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제작하는 시제품 등 비용에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한 경우 불인정
- 단계 협약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집행된 경우 불인정
- 검수 확인서 등 해당 사업과의 연관이 있음을 증빙하는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06 연구활동비

1. 연구활동비 계상·사용기준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단,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관련법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2항

2)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 관련법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제1항,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제1항, 제58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혁신법 매뉴얼 220p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관련법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 혁신법 매뉴얼 217p

4) 여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함

-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선택하여 계상

※ 관련법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6항

5) 국외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 관련법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8항

6) 소프트웨어활용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는 계약금액 전부를 계상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9항

7) 학회 연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 인정됨

- 단,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219p

8) 논문게재료는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시(사사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비영리기관은 직·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사용이 가능함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219p

9)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14항혁신법 매뉴얼 220p

10)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이 불가함 (사무용품비는 계상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하거나 협약변경 사전승인 경우에만 계상 가능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221p

11)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225p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세목		증명자료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④ 계약에 의한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⑤ 자체규정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자체규정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시험·검사·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④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⑤ 자체규정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회의장임차료에 포함된 부대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회의비 식비	① 사전 내부결재문서 ②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사전 내부결재문서와 실제 회의내용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실제 회의내용이 수정 반영된 내부결재문서로 갈음 가능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 ·세미나 개최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세목		증명자료
출장비-국내		① 출장신청서(내부품의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교통비, 숙박비 등) 구비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④ 자체규정(내부여비규정)
출장비-국외		① 출장신청서(내부품의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 (항공권(E-ticket 포함), 숙박비 등) 구비 ⑤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다른 증명자료로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⑥ **(해당시)**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⑦ **(해당시)**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⑧ 자체규정 (내부여비규정)
소프트웨어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③ 거래명세서(사용계약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규정 ⑦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사무용품비,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세목		증명자료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교육참가자 성명 포함)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필요 시)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참가자 성명)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학회 참가 확인서 등 학회참가 여부(명찰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③ 자체규정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③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 (내부결재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④ 자체규정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도서명, 권수 등 확인가능한 자료)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해당 과제에 성과 등록한 내역으로 갈음 가능

세목		증명자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인쇄 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2. 연구활동비 Q&A

Q 참여연구자와 외부인과의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식비 혹은 다과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3항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의 경우에 식비(“다과비”포함. 이하 같음) 계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의 형태와 무관하게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모두 식비 계상이 가능함
-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정산 시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이나 회의비 중 식비는 동일 기관 소속자 간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사유에 해당

Q 화상회의 후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회의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회의 참석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지급은 불가함

Q 전시회 참가비는 연구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학회, 세미나 등의 참가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함. 단, 전시회 참가가 부스 설치 등 홍보 목적인 경우에는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 계상

Q 연구개발기관이 개최한 학술대회에 발표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발표수당, 항공료,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술대회의 개최시 외부전문가의 발표수당, 항공료, 체제비 등은 직접비에서 사용 가능, 다만,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에서 사용

Q 학회 참가와 관련한 항목(학회 입회비, 연회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제8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의 입회비, 연회비, 논문 투고 및 게재료 등의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참여연구자 등의 종신 학회비는 사용할 수 없음

Q 워크숍 개최 시 홍보용 배너제작(디자인비, 인쇄비, 거치대 등)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디자인비, 인쇄비, 배너 제작비 등의 사용이 가능함

Q 수행연구개발과제의 연구행정을 맡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출장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 등) 사용이 가능함
- 단, 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음.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활동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Q 재난, 재해, 그 밖에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국외출장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항공료, 숙박 등)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재난, 재해, 그 밖에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항공료 등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였다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Q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출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가능 함. 다만, 차량 임차료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의 교통비가 중복계상되지 않아야 하며, 자체 여비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됨

Q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에 원래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의 신설(추가)도 가능한가요?

- 최초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작성 첨부(신설)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6호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가능(2022. 1. 1. 추가됨). 다만,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이 불가하며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 없이 사용 가능

Q 대학 개인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은 연구실에 해당하며 교수의 개인사무실도 연구실에 포함됨. 다만,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구실의 일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해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교수 개인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냉난방기 설치는 불가능함

Q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분석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함.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하였기에 연구수행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험분석비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

Q 비영리기관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나요?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한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함

Q 특근 식대 집행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야근·특근 식대는 사용 가능하며 증명자료는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임(연구개발기관의 야근·특근 식대 관련 자체규정 제정을 권장함)

Q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 직원을 전문가로 활용하여 전문가활용비 지급할 수 있나요?

-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연구실)에 소속된 자가 아닌자에 대해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사용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활용비 계상 불가

Q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출장비 및 회의비 등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등 사용이 가능한가요?

- 「혁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17쪽 중 11쪽)에 참여연구자, 연구지원 인력으로 직접비 인건비를 계상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
  즉, 간접비로 인건비 지급시 연구활동비 사용불가

Q 회의비 사전내부결재 해야하나요?

- 회의비 중 식비는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한 것을 의미하며, 회의 시작 전 사전 구매 또는 사전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 전까지 내부결재가 완료되어야 함

3. 연구활동비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과 과제 수행 중 전문가 자문이 필요 • 동 대학의 타 과 교수인 홍길동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 수행기관 간 거래로 전문가활용비 불인정 ※ 연구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불인정* * 허용 예외 : 비영리기관 상호 간 또는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활용 시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소속 인력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는 참여연구원 홍길동의 출장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식대를 정액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로 계상 • 홍길동은 출장 중 업체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비로 3만원을 연구개발비 계상(또는 업체 관계자가 회의비 3만원 부담)	• 출장 식대 2만원 불인정 ※ 회의비로 계상한 금액은 출장비에서 관련 식대 차감 ※ 식대 제공받는 경우 출장비에서 관련 식대 차감 [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는 연구과제 협약 후 2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로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 가능을 확인하고 신규직원을 위해 컴퓨터 2세트를 구입함 • 사용기준 별지 제4호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미제출	• 컴퓨터 2세트 구입비 불인정 ※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작성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제6호] –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연구협약 시 연구실운영비 계획(사용기준 별지제4호 서식)이 없었더라도 사전승인으로 협약변경 가능('22.1.1. 개정)
• ㈜○○는 연구실 냉난방을 위하여 냉방기 1대를 구매키로 계획하고 협약체결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함 • 연구기간 중 1대로는 부족하여 1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당초 협약 시 냉방기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했으므로 별도의 협약 변경 승인신청하지 않음	• 추가 1대 해당금액 불인정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수 * 변경 범위 : 총 금액 증액, 품목 변경, 특정 품목 수량 증가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제6호] –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 ㈜○○의 홍길동 대리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확인하던 중 연구활동비 내 그 밖의 비용으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 등이 사용가능한 점을 확인 • 이에 회사에 부과된 전기세 및 공과금, 통신료 등을 연구활동비로 사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공공요금(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인 경우 불인정 [혁신법 시행령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11호]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 복사 ·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2022년 10월1일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사용계약 기간 6개월이며, 월 1백만원씩 6백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선지급) • 연구개발기간은 2021.4.1.~2022.12.31.	• 연구개발기간 이후 기간 사용료 3백만원 불인정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금액 전액 계상 가능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10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 ㈜○○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 24회 1,497,900원 사용	• 외부기관 참석자 없는 회의비 1,497,900원 전액 불인정 [혁신법 매뉴얼 217p]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여는 회의비중 식비(다과비 포함)을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는 10월3일에 예정된 회의에 대해 식비 50만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10월1일에 연구비카드를 활용해 사전 결제 • 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이후, 10월2일에 기안을 완료하고, 내부결재를 득함	• 사전 결재를 득하지 않은 회의 중 식비 50만원 전액 불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 '24.11.13.] – 사전 내부결재는'회의 시작 시점' '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 필요 – 회의 시작 전 사전 구매 또는 사전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 전까지 내부결재가 완료되어야 함 – 단,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전 기안을 완료하고 결재문서가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
• ㈜○○에서는 2022년 출장 40건 15,840,000원 집행, 출장기간 중 출장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에 출장 인원 중 일부가 회의 참석하여 회의비 사용 • ㈜○○ 내부규정에는 출장여비는 정액제임	• 출장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6건 2,400,000원 및 같은 날 사용한 회의비 6건 금액 불인정 ※ 현장실사를 통해 출장일과 겹친 날의 회의 건에 대해 증빙을 요청했으나 증빙자료 없거나 부실로 모두 불인정
• ㈜○○의 홍길동 연구원은 참여연구원의 출장시 출장비(여비+식비)를 연구비에서 사후 현금으로 32건 11,090,000원 지급함 • 회의를 위한 출장으로 출장비와 회의비(식대)가 이중 지급된 11건이 있음	• 출장비와 회의비가 이중 지급된 비용 중 식대 1식 불인정 1년간 총 613,000원 불인정 [사용기준 제21조제4항, 혁신법 매뉴얼 218p]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불가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의 홍길동 대리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회의 진행 중 회의비 식대로 297,000원을 연구비카드로 사용 • 회사는 카드사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7,000원을 포함하여 297,000원을 회의비로 신청	• 매입 부가가치세 27,000원 불인정 ※ 실제 환급여부 불구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계상 불가 [사용기준 제21조제4항, 혁신법 매뉴얼 178p 〈표 3-5〉]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 주관연구개발비관 ㈜○○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가 회의비 식대 500,000원을 사용 • 각 연구개발기관은 회의비 식대를 250,000원씩 연구비에서 집행	•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타 연구개발기관과 사전결재를 거쳐 회의비 식대를 집행하였다면 집행 가능 • 각 연구개발기관이 회의비 식대를 나누어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혁신법 매뉴얼 217p]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그 외 연구활동비 불인정 사례 〉

-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사전승인)" 없이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한 경우 불인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기간이 해당 사업 단계 협약기간을 초과한 경우(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불인정
- 구독서비스의 이용기간이 해당 사업 단계 협약기간을 초과한 경우(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 자체 여비규정과 상이한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불인정
- 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외부 전문가 활용비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 성격의 현금 지급 또는 선물 등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의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과 별도의 규정으로 야근식대 등을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교육훈련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연구실운영비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구체적인 규정 미비로 인해 연구환경개선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편의를 위한 비용 집행한 경우 불인정
- 답례품 지급 대상과 수량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 미제공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 확인 불가한 경우 불인정
-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일용직 활용비를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과 상이한 R&D 과제용 규정을 적용하여 회의비 등을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및 표준 활동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 목적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고가의 수입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구입한 경우 불인정
- 연구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연구실 운영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사용료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비용(평일 점심 식대, 출장비 등)을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 소속 내부인원만 참여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비참여인력에게 출장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국외출장의 경우 당해 과제와 직접관련이 없을 경우 불인정
- 영리기관에서 연구행정을 맡고 있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출장비 불인정

07 연구수당

1. 연구수당 계상·사용기준

1)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 포함)+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불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 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도 연구수당으로 계상 가능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1항, 제2항, 제7항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내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사전 승인을 통해 연구수장을 원래 계획보다 증액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3항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함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5항

4)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6항

5)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단계 내에서 이월 가능하고 단계 간 이월은 할 수 없음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230p

6)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232p

7)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 선택하여 사용가능)

※ 관련법규 : 혁신법 매뉴얼 232p

8)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혁신법 매뉴얼 232p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서류 (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 증명

2. 연구수당 Q&A

Q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데 사용비율에 현물 포함인가요?

-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 또는 직접비 협약금액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임

Q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 100% 지급 가능한데, 연구수당 집행한 내역을 포함하여 80% 이상인가요?

-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 통합 RCMS 적용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사용금액을 포함 함

Q 협약을 변경하여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려는데 협약체결 당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있나요?

-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에 연구수당을 협약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이 증액되거나,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협약 변경)으로 연구수당의 증액이 가능함

Q 인건비계상률 0% 참여시 연구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 인건비계상률 및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모두 0%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4항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음

Q 연구수당 지급에 따라 발생한 기관부담금은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등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또는 연구수당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Q 연구수당의 단계 내 이월은 가능한가요?

-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단계별로 정산을 실시하므로 단계 내에서는 연구수당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다음 단계로 이월은 불가함)

Q 3차년도로 구성된 단계 연구기간 중 1차년도 참여연구자 2명, 2차년도 참여 연구자 1명, 3차년도 참여연구자 1명인 경우 연구수당 단독 수령이 가능한가요?

- 불가함. 「혁신법」에서는 단계정산을 실시하는 바 3년에 걸친 단계연구기간의 과제로 2명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1명에게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Q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Q 연구수당 집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연구수당 집행이 가능한가요?

- 규정상 연구수당의 지급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연구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여도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함(사업비사용실적보고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함)

3. 연구수당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는 연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접비 현금 예산의 사용비율이 50%에 불과 •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한 2천만원을 전액 사용	• 연구수당 6백만원 불인정 ※ 직접비사용비율의 20%p 가산한 비율까지 사용 가능 (한도액 : 2천만원*(50%+20%) = 1,400만원)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7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인구수당 지급액 X (인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frac{20}{100}$)
• ㈜○○는 홍길동 대리가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을 확인 • 이에 연구개발계획서 예산으로 인건비 1억원 및 연구수당 2천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1억원 사용 • 정산결과에 따라 인건비 한도초과로 4천만원이 불인정 되어 인건비 사용액 1억원 중 6천만원만 인정 •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2천만원 사용	• 연구수당 800만원 불인정 ※ 정산결과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까지 사용 가능 (한도액 : 6천만원*20% = 1,200만원)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7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 그 외 연구수당 불인정 사례 〉

- 2인 이상의 참여연구자 중 1인에게 전체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원이 없음에도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계상 후 계상액 전액 집행한 경우 수정된 인건비의 20% 초과액 불인정
- 참여연구자의 참여중단으로 인해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적게 집행하여 연구수당 집행금액이 실집행인건비(정산 결과에 따른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하게 된 금액 불인정
- 연도별 연구수당 예산금액을 변경하면서 단계기간 총 연구수당 계상금액이 협약체결 당시의 계상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원래계획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 연구개발기간의 참여연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연구근접지원인력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08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 계상·사용기준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직접비에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관련법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제1항

2)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법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제3항

3)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이며,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 잔액 등을 직접 회수 가능함

※관련법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제7항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세목	증명자료
위탁연구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2. 위탁연구개발비 Q&A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과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혁신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고 명시)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조세당국에 있음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귀속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는 위탁연구개발과제는 대가성이 있는 과제로 판단됨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규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위탁연구개발비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X 40%(초과 불가)

위탁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연구개발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이 불가한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매출부가가치세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가능

[위탁연구개발과제 과세 대상일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및 부가가치세 지급 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방법	부가가치세 지급방법	비고
1)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	- 위탁연구개발비 내 부가가치세 미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	- 부가가치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	- 주관연구개발기관(영리법인)이 부담한 위탁연구개발비의 매입부가가치세는 추후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매출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위탁연구개발비 실제 사용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계상 불가
2)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불가능	- 위탁연구개발비 내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기타비용)에 부가가치세 계상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 지급 -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부가가치세 자계좌이체 신청	

3. 위탁연구개발비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위탁연구개발비 불인정 사례 〉 • 세대상 과제를 수행중인 위탁기관이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경우 부가세 금액 불인정 • 사업비에서 매출부가세를 집행한 경우, 총 사업비 집행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한 매출부가세 금액 불인정 • 전문기관 승인 없이 원래 계상된 금액 보다 20% 이상 증액한 위탁연구개발비 불인정	

09 간접비

1. 간접비 계상·사용기준

1) 연구지원비 내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는 대학만 계상 가능함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제1항

2)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민법 등에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인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연구개발비 또는 자체 재원으로 계상가능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제2항

3) 비영리기관은 간접비 통합관리가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기간 내에 간접비를 흡수해야 하며, 연구종료일 이후 흡수할 경우 회수대상임
- 영리기관 : 간접비 통합관리가 불가하며, 간접비 사용 잔액은 반납해야 함

※ 관련법규 : 혁신법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제51조(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제59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혁신법 매뉴얼 242p

4) 간접비 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적용됨.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비율을 간접비 고시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비율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단, 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낮거나 높게 적용 가능)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시설 ·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정보시스템 구축 ·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기술이전 · 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5.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외국의 정부 · 기관 ·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사전승인사항)
- 간접비 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이 가능함(사전승인사항)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제55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1항, 혁신법 매뉴얼 245p

5)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간접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관함

• [계산식] 연구개발과제(해당 단계)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비율)

- 위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받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시점의 간접비비율로 함
-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간접비 잔액을 이관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 · 지급 · 이관), 제54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제62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6)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율은 10% 임

※ 관련법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4항

7)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불인정(회수대상) 됨

※ 관련법규 : 혁신법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5항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세 목		증명자료
간접비	비영리기관	해당없음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2. 간접비 Q&A

Q 직접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를 활용한 연구개발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 단, 직접비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Q 간접비 이월이 가능한가요?

- 간접비의 단계 내 이월은 가능하나 단계 간의 이월은 불가함

Q 연구자들의 우수한 연구성과 등의 홍보를 위해 홍보관 및 부스 등을 설치비용을 간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혁신법시행령」 [별표2] 및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제1호에 따라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가능함

Q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인력에 대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일 특정 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는 아니지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지원인력인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Q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간접비 고시율은 어느 시점으로 적용하게 되나요?

- 간접비비율 적용시점은 해당단계의 시작 시점임

Q 간접비 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이 필수인가요?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5조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나 계상은 필수사항이 아님
- 필요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 가능

Q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이 필수인가요?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함

3. 간접비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는 연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접비 현금 예산의 사용비율이 40%에 불과 • 간접비는 당초 계획한 2천만원을 전액 사용	• 간접비 1,200만원 불인정 ※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도 해당 비율까지 사용 가능 (한도액 : 2천만원*40% = 800만원) [혁신법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5항제3호] -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는 김건성 대리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 연구지원인력 김정석 행정원으로부터 간접비는 기관에서 일괄흡수하여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 간접비 예산 1천만원을 건별로 증빙하지 않고 자계좌이체로 회사로 일괄흡수	• 간접비 1천만원 불인정 ※ 영리기관은 간접비 기관단위 통합관리 불가 [혁신법 매뉴얼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 관리 - 비영리기관 :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불인정 사례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 협약 시 간접비 고시비율은 20% 였고 다음해에 간접비 고시비율이 25%로 변경됨 • ○○연구원의 과제는 1단계 2년, 2단계 2년 총 4년 예정 연구비는 매년 2억원씩 • 1년차에 간접비 4천만원, (승인 절차 없이) 2년차에 5천만원을 일괄 흡수하여 사용함	• 2년차 간접비 1천만원 불인정 ※ 비영리기관이 과제 시작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승인절차 없인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불가 [혁신법 매뉴얼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해진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 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는 박람회에서 과제 성과가 아닌 회사 홍보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설치비와 홍보물 제작비용을 연구과제 간접비로 집행함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연구비 불인정 [사용기준 제17조제1호] –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홍보비용을 집행할 수 있음. 다만, 과학홍보물에 대한 집행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비용만 집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회사홍보를 위한 비용은 계상 불가함

〈 그 외 연구활동비 불인정 사례 〉

- 비영리기관이 과제 시작 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불인정
-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불인정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야 지출한 경우 불인정
-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 불인정
-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간접비 흡수한 경우 불인정
- 영리기관의 사무실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상비약(연구실안전관리비)이 아닌 비타민 음료를 구입한 경우 불인정

MEMO

MEMO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하는 청렴세상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기술개발전략실